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32

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이탄희·박주민·이용빈

위성곤 • 맹성규 • 최인호

전용기 · 서삼석 · 박찬대

김윤덕 · 김성주 · 민홍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에서 발표한 '2019 학생건강검사'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.6%,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. 9%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. 또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'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'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%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.3%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,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・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・축산물・수

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,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 법률 제 호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충족할 수 있으며, 올바른"을 "충족하고 올바른"으로, "있는"을 "있도록 과일·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을 포함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양관리기준은"을 "영양관리기준 및 식품구성기준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영양관리) ① 학교급식은	제11조(영양관리) ①
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	
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, 올바	<u>충</u> 족하고 올바른
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	
줄 수 <u>있는</u> 식품으로 구성되어	<u>있도록</u> 과일·채소 등 다
야 한다.	양한 농산물・축산물・수산물을
	<u> 포함한</u>
② 학교급식의 <u>영양관리기준은</u>	② <u>영양관리기준</u>
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및 식품구성기준은